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 시행

공준봉

I. 개요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을 위해 2006년 12월 28일 개정 교통안전법이 공포되었고, 2007년 9월 12일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군도, 지방도, 국도 및 고속도로의 설계단계에서 교통시설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진단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독일·영국 등 유럽 16개국, 미국 등에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07년부터 모든 유럽국가가 실시 또는 도입 중이다. 교통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독일·영국과 공동으로 기술사, 공무원, 연구원 등 각계분야 실무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07년 10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에서는 도로 및 교통분야 기술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진단 진단요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책임진단사 과정 1기 48명이 수료하였다.

교육내용은 도로교통안전진단 기초, 교통안전법, 교통사고원인조사, 진단절차 및 보고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요구사항, 속도와 안전,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횡단구성 및 선형, 도시부도로설계, 보행자/자전거도로 진단기초, 도로/교통안전시설, 도시부도로 진단기초, 신호교차로, 지방부 도로 진단실습, 실습결과 발표 및 평가 등을 심도 있게 교육하였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좀 더 보완하고 교육대상자도 확대하여 진단요원의 저변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II.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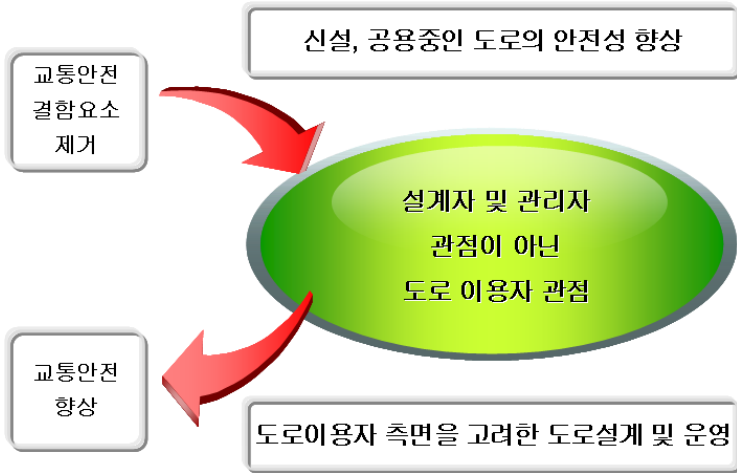
1. 국내추진현황

- 1994년부터 안전진단에 대한 논의 시작
- 그 후 지속적으로 도입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연구 진행
- 2002년부터 고속도로 안전진단 사업시행, 국도 일부 구간 시범사업
- 2006년 12월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신규도로 건설 시 안전진단 의무 시행
- 2007년 하위법령 및 지침 마련
- 2008년 7월부터 전면 시행

2. 교통안전법 하위법령개정 추진

- | | |
|---------------------|-------------------|
| • 2007. 7. 11 | 하위법령 장관방침 |
| • 2007. 7. 16~8. 30 | 관계부처 협의 |
| • 2007. 7. 16~8. 20 | 부패영향평가 |
| • 2007. 9. 12~10. 1 | 입법예고 |
| • 2007. 10. 11~ | 규제심사 |
| • 2007. 11~12 | 법제심사(법제처) |
| • 2007. 12 |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포 |
| • 2008. 1. 01 | 시행(진단은 동년은 7월 1일) |

Ⅲ. 국내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의 특징



〈그림 1〉 진단 목적

1. 대상사업 및 진단단계

1) 진단 종류 및 대상사업

구분	대상	범위	
일반 교통 안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6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함 	고속국도 일반국도	총길이 5km 이상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총길이 3km 이상
		시도 군도 구도	총길이 1km 이상
특별 교통 안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 	단일로	반경 500m (시가지 300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차량정지선에서 후방으로 5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단 실시 시기

구분	시기	진단보고서 제출 시기	검토 내용
일반 교통 안전 진단	도로 설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 등에 관한 설계승인 전 •주로 실시설계단계 중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설계, 교통처리체계, 도로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등의 도로안전시설 조명계획, 조경계획 등이 검토되며 도로의 공용 상태를 고려함
특별 교통 안전 진단	도로 운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 자료, 교통안전점검 결과 등을 이용하여 도로의 설계 및 배치, 기능상의 모든 안전결합사항을 도로 이용자의 시각에서 발견함

2. 진단실시자

1) 교통안전진단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

구분	내용	진단기관	법적근거
일반교통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의 개발 •도로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법 제35조 제1항
특별교통 안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구간 •교통안전점검 결과 문제 지점 및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법 제36조 제1항

2) 진단팀 구성

	구성	규모
외부 전문 진단실시자에 의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처에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2~5명으로 구성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내부 전문 진단실시자에 의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처 내부기구(계열회사, 자회사)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에서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통행정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진단실시자 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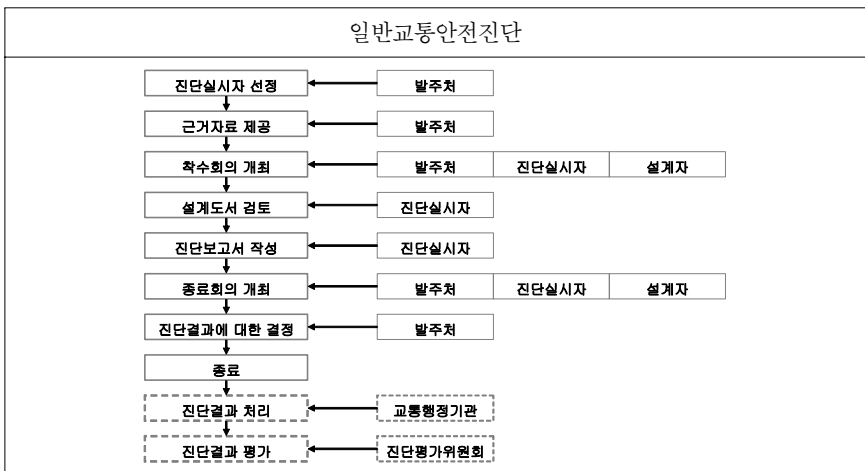
- 책임교통안전진단사는 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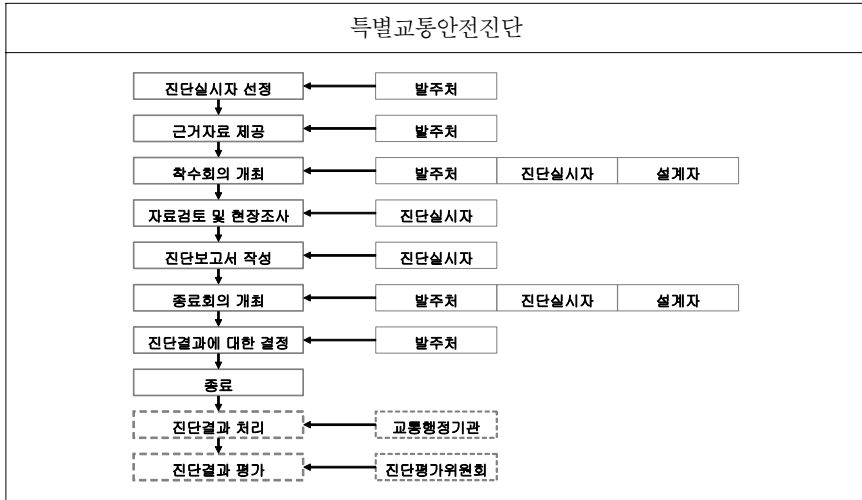
직책	자격요건	공통요건
책임교통안전진단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관련 기술사 자격소지자 • 도로관련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 도로건설 감리 또는 감독, 안전진단 또는 점검·평가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한다)에서 교통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
교통안전진단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관련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 도로건설 감리 또는 감독, 안전진단 또는 점검·평가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보조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관련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 도로건설 감리 또는 감독, 안전진단 또는 점검·평가업무를 4년이상 수행한자 	

4) 진단실시자 자격갱신요건

구분	요건
자격 갱신	• 3년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음
자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취득 후 3년 동안 3건 이상의 도로교통안전진단 실시경력 • 또는 교육기관에서 평가를 받음

3. 사업절차





Ⅳ. 도로교통안전진단 절차

1. 수행과정

1) 설계도서 검토

-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들의 신뢰성 및 적합성 점검
- 설계도면의 진단
 -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가상적 도로이용
 - 도로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공간적 특성에서 차량의 적절한 속도와 충분한 시인성에 대한 평가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선시책의 적합성여부를 평가
- 점검표에 의한 자가 점검
- 현장조사
 - 확장, 개량사업 등 필요시 현장조사를 수행



〈그림 2〉 현장조사 착안사항

2. 일반교통안전진단 절차

1) 진단실시자 선정

-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정
- 중대한 사업의 경우, 적어도 2명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

2) 근거자료 제공

-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 설계보고서
-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 등) 등

3) 착수회의 개최

- 사업배경, 진단과정, 진단목적을 설명/협의
- 계획, 설계 또는 시공에서 경험된 문제와 같은 이번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논점에 대하여 토론

4) 진단보고서 작성 원칙

- 진단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문서화하여 발주처에 보고

- 권고사항은 안전결함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
 - 진단수행을 통해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개선작업에 대한 결정사항을 근거로 한 공식적인 문서로서 제공됨
 - 진단절차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포함

5) 종료회의 개최

- 진단결과에 대해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 개최
- 설계자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진단실시자에게 요청
- 진단실시자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6)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발주처에 의해 결정
-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문제점의 해소 및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 권고사항을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

7) 종료

- 발주처의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

8) 진단결과의 처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 처리할 수 있음

9)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3. 특별교통안전진단 절차

- 1) 진단실시자 선정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2) 근거자료 제공

-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결과보고
-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계획
- 준공보고서
- 준공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 등) 등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 교통사고자료(충돌도 포함)

3) 착수회의 개최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4)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들의 신뢰성 및 적합성 점검
- 설계도면의 진단 및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 현장조사
 -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교통시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자로서 도로를 살펴봄
 - 경우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시간대(예, 주야간 또는 통학 시간 등)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상조건별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함
 -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여 향후 근거 및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제출 또는 보관함

5) 종료회의 개최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6)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7) 종료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8) 진단결과의 처리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9)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 일반교통안전진단과 동일

V. 진단보고서 작성

1. 일반교통안전진단

1) 서론

- 제출문(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장), 위치도(1/25,000 ~ 1/50,000)
- 진단실시자 명단, 진단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진단 개요

-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진단단계, 진단기간, 발주기관명 및 주소
- 진단구간 평면도(1/1,000 ~ 1/5,000)

3)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 관련자료(설계도면 등)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서술
- 설계도면 등을 이용하여 설명이 포함된 형태의 서술

4) 결론

5) 부록

2. 특별교통안전진단

1) 서론

- 제출문(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장), 위치도(1/25,000 ~ 1/50,000)
- 진단실시자 명단, 진단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진단 개요

-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진단단계, 진단기간, 발주기관명 및 주소
- 진단구간 평면도(1/1,000 ~ 1/5,000)

3) 도로 및 교통환경 조사 분석

- 도로현황, 교통량현황, 교통사고 분석 현황

4)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5) 결론

6) 부록



공준봉